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105262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K 주식회사

피고 자본재공제조합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2014. 11. 17.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1. 4. 11. 체결된 OEM계약 및 2013. 9. 17. 체결된 표준하도급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OEM 제품 및 원고 발주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 및 자재의 공급을 위한 '부품 및 자재 공급합의'(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 자이다.

피고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 등 각종 보증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J으로부터는 2014. 12. 31.기준 1,219,761,300원의 출자를 받은 공제조합이다.

#### 나. J과 피고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J은 2014. 11. 17. 피고와 이 사건 주계약상 원고에 대한 자재지급의 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자(채무자) 'J', 피보증자(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2,100,000,000원', 주계약명 '부품 및 자재 공급합의서', 보증기간 '2014. 11. 17.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한 (자재)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2. 8. J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자재)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 다. 원고의 자재 공급 및 J의 자재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4. 10.부터 2014. 11.까지 J의 요청에 따라 J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구매대행 형태로 3,866,570,607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위 자재대금 중 같은 기간 동안

1,766,570,607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던 중, J은 2014. 12. 31.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 2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3. 3. J에게 구매대행 자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2,100,000,000원을 2015. 3. 6.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5. 3. 4. 소외 회사로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지급 구매대행 자재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 **라. 원고의 보증금 지급 청구와 피고의 보증금 지급 거절**

원고는 2015. 3. 4.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 구매대행 자재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2015. 3. 16.자 이메일 및 2015. 5. 27.자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서 및 지급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3. 17.자 및 2015. 6. 1.자 각 내용증명을 통해 '본건 보증서는 사급자재에 대한 반환의무를 보증하는 자재지급보증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구매대행 자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보증금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자재)지급보증과 자재구입보증을 각 약관의 문언해석, 기존거래에 적용된 J과 피고의 (자재)지급보증 및 자재구입보증 구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재지급보증과 자재구입보증은 사급자재 대가의 지급보증인지, 단순한 자재 구입대금 지급보증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 게다가, J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체결 시 원고에 대한 사급자재 대금의 반환을 위해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사급자재 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기

위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지급보증에서 정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재)지급보증과 자재구입보증을 분명하게 별도의 상품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으며, J이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자재)지급보증의 형태로 계약된 것으로 사급자재에 대한 반환의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자재)지급보증 약관규정의 해석상 J이 구매대행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구입한 자재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약관의 해석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약관규정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관의 의미가 문언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문언상의 의미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약관상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동기과 경위,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전도자재대가의 반환채무"의 해석상 J의 구매대행 물품대금채무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약관 제1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한 선금 또는 전도자재대가의 반환채무(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약관조항의 문언 중 "전도자재대가의 반환채무"는 그 문언상 보증채권자의 소유인 전도자재를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재 자체에 대한 반환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주 계약에 따른 구매대행물품대금 지급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상당하다.

다) "보증채권자에 대한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J의 구매대행 물품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

위 약관규정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 그 문언만으로는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이행책임을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계약 상의 구매대행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는 "보증채권자에 대한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정된다.

① 2013. 1. 8. 체결된 J과 피고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약관에는 동일한 부분의 문구가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지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이행책임"으로 규정하여 그 이행책임을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약관에서는 단순히 "보증채권자에 대한 이행책임"으로 그 약관을 변경한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의 범위를 다소 확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지급보증은 선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 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이행책임을 도급계약상의 주된 이행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이행책임"은 선금 또는 전도자재대금의 반환채무와 유사한 성질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주계약은 사급자재의 공급방식에 구매대행이라는 방식을 추가한 것인데, 거래관행상

도급인이 자재 또는 부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사급의 경우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으로 구분되어

이루지고 있으므로 구매대행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방식은 원고와 J

사이에 기존에 이 사건 구매계약상 이루어지던 유상사급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도급인이 무상으로 사급자재를 공급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유보하였던

부품 또는 자재를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의 정도와 유상사급 또는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공급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의 정도는 동질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부품 또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자재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재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의 대가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어 자신이 지급받을 자재대금이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도급의 대가에 의해 담보되므로, 소유권을 유보하여두어 그 부품자체를 환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무상사급과 도급인이 확보하는 담보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J이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자재는 여전히 계속적 도급관계에 있는 OEM계약 또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관련한 자재 또는 부품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발주물량과 관계없이 J이 원고를 통하여 범용성 있는 일반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와 J 사이에 구매대행 물품대금의 지급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가) 개별약정의 우선원칙 및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와 J이 2011. 4. 1. 체결한 OEM계약에서는 제4조에서 "'사급 자재'라 함은 '계약제품의

제조와 조립을 위하여 원고가 J에게 제공한 외자 부품 및 내자부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3조에서 "모든 사급자재는 무상 사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3. 9. 17. 체결한 이 사건 구매계약에서는 제8조에서 "원고는 J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등을 위하여 공급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의 제조 등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사급재')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와 J은 상호 협의하여 사급재의 유·무상 구분을 결정하고 구매자는 사급재가 유상일 경우 그 단가를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원고와 J은 체결한 2014. 11. 17. 이 사건 주계약은 위 OEM계약 및 이 사건 구매계약의 발주부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협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원고는 J으로부터 요청받은 부품 및 자재에 대하여 무상사급 또는 구매대행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으며, 해당부품 및 자재의 공급형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부품 및 자재의 공급을 구매대행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구매대행가격을 결정하고 J은 해당 구매대행부품대금을 요청한 부품 및 자재를 수령한 후 6개월 이내에 두산에게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계약에서는 부품 및 자재의 공급방식을 변경하면서 "J은 요청한 부품 및 자재를 수령한 후 해당부품 및 자재의 구매대행 부품대금 지급시까지 원고에게 구매대행부품대금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 또는 보증서의 금액은 21억원으로 하며 기간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015. 5. 30.까지로 한다."고 하여 J이 이 사건 주계약 중 구매대행물품대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 J의 직원인 A은 이 사건 주계약의 체결을 검토 중이던 2014. 11. 13. 피고의 직원 B에게 "K에서 사급자재의 자재보증서를 요청을 하여 계약서 초안을 보냅니다. 기 현대자동차 자재보증과 같은 성격의 보증서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⑤ 위와 같은 J의 요청에 따라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J은 피고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서도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계약은 사급자재의 공급방식에 구매대행이라는 방식을 추가한 것이므로 원고와 J 사이에 기존에 이 사건 구매계약상 이루어지던 유상사급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의 담당자도 이 사건 주계약을 사급자재의 공급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의 담당자로서는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서를 간략하게 읽어보기만 하였더라도 J이 요청한 보증서가 구매대행 방식으로 부품 및 자재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지급하여야 하는 구매대행물품대금채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는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을 OEM계약이나 이 사건 구매계약이 아닌 이 사건 주계약으로 명시하였고, 이 사건 주계약상 지급보증약관의 "이행책임"의 문구에 대응할만한 J의 의무는 구매대행물품대금 지급의무일 것이라고 J이 신뢰하였으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자재)지급보증약관의 해석상 구매대행물품대금채무가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J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J의 원고에 대한 구매대행물품대금채무의 지급도 보증하는 것으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소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J의 구매대행 물품대금채무의 불이행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한도 내의 미지급 구매대행 물품대금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J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계약에 따라 J에 공급한 자재대금채권 21억 원 중 80%를 출자전환하여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의 보증금 지급채무도 그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리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 시기, 거래 경위, 거래 후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경영상태의 변화, 다른 평가방법을 기초로

산정한 주가가액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가격 만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액 또는 그 거래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액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 다. 인정사실

① J은 2014. 12. 31.경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2014회합5024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② 원고는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채권 21억 원을 포함한 총 2,721,445,53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③ J은 이에 대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로 전부 시인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은 2015. 10. 16.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중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80%인 2,177,156,427원은 1주의 액면금액 및 발행가액을 모두 5,000원으로 정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544,289,106원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분할하여 현금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고 같은 달 23. 그 인가결정을 공고하였다.

④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다음 날인 2015. 10. 17. 위 회생계획에 따른 1,723,158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5. 12. 30. 같은 내용의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1,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을 제12호증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조사기준일 당시 부채가 138,904,546,058원으로 자산 104,560,645,048원을 초과하던 점, J은 비상장회사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의 공정한 시가 등이 존재하지 않던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한다 하더라도 출자전환으로 2015. 10. 17.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공정한 가치의 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J에 대한 위와 같은 출자전환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현 판사 허 민 판사 이상언